

의안번호	2209946
의 퇴 인	이재관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5.
추계번호	25F240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에 따라, 소득세는 2027년 1,895억원, 2029년 1,895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5,685억원(연평균 1,895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6조)	-1,895	-1,895	-1,895	-5,685	-1,895

주: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외에 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,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16조 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○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- (공제율) 벤처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, 10% → 30%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,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(단위: %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투자액</th><th rowspan="2">현행</th><th colspan="2">개정안</th></tr> <tr> <th>수도권</th><th>수도권외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0.3억원</td><td>100</td><td rowspan="2">100</td><td rowspan="2">100</td></tr> <tr> <td>0.3~0.5억원</td><td>70</td></tr> <tr> <td>0.5~0.7억원</td><td rowspan="3">30</td><td rowspan="2">70</td><td rowspan="2">70</td></tr> <tr> <td>0.7~1억원</td></tr> <tr> <td>1~1.5억원</td><td rowspan="2">30</td><td rowspan="2">30</td></tr> <tr> <td>1.5억원~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 - (적용기한) 2025.12.31. → 2028.12.31.	투자액	현행	개정안		수도권	수도권외	~0.3억원	100	100	100	0.3~0.5억원	70	0.5~0.7억원	30	70	70	0.7~1억원	1~1.5억원	30	30	1.5억원~		
투자액	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
		수도권	수도권외																						
~0.3억원	100	100	100																						
0.3~0.5억원	70																								
0.5~0.7억원	30	70	70																						
0.7~1억원																									
1~1.5억원		30	30																						
1.5억원~							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6조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	○	○ 개정안의 소득공제율 인상에 대한 세수효과는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는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효과만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7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
 - 향후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4년 잠정 실적(1,895 억원)이 유지된다고 가정
- 이외에도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 - 개정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인상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출자 등의 규모별·투자대상별 소득공제 자료가 필요하나, 소득공제 신청 시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공제율 인상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세수추계를 할 수 없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개요)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거주자의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

- 공제대상: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거주자
- 공제율: 공제대상 및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용

[표 2]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: 현행 및 개정안

(단위: %)

공제대상	투자금액	현행	개정안	
			수도권	수도권 외
벤처투자조합 등,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, 창업·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		10	30	
벤처기업 등,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법으로 모집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지분증권에 투자	0.3억원 이하	100	100	100
	0.3~0.5억원	70		
	0.5~0.7억원	30	70	70
	0.7~1억원			
	1~1.5억원		30	30
	1.5억원 초과			
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

□ (조세지출 실적)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4년 1,895억원으로 2021년 이후 3년간 연평균 61.8% 증가

- 2018년 이후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, 연도별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남

— 2022년 조세지출 실적은 전년 대비 66.0% 증가한 반면, 2024년은 전년대비 0.5% 감소

[표 3]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	2021~2024년 연평균 증가율
조세지출액	891	1,075	1,785	1,905	1,895	-
(증가율)	(50.3)	(20.7)	(66.0)	(6.7)	(-0.5)	(20.8)

자료: 대한민국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세지출예산서의 2024년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향후 벤처기업 등에 대한 신규 투자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, 연도별 조세지출 실적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므로, 2024년 조세지출액이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에 따라, 소득세는 2027년 1,895억원, 2029년 1,895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5,685억원(연평균 1,895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, 2027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16조)	-1,895	-1,895	-1,895	-5,685	-1,895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